

의약품의 강제실시에 관한 성공사례 연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 준 우*
서강대 법학과 교수



서론

최근 들어 각종 언론매체에서 의약품 관련 뉴스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과거의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조류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에 관한 뉴스를 자주 볼 수 있다. 문제는 위의 약값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비싸다는 데에 있으며, 이의 해결방안으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강제실시’이다. ‘의약품의 강제실시’가 논의되는 전제는 위의 의약품이 ‘특허권’에 의해 보호되고 있어 특허권자가 원하는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허권자가 원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을 보상금의 형태로 지급하고 그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한 특허권자의 허락을 강제로 명령하여 의약품을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강제실시제도’이다. 국제적으로는 특허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업체의 로비를 받는 미국 정부는 당연히 ‘강제실시’를 반대하여 왔으며, 특허의약품의 생산능력이 없는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의 정부 중 일부는 ‘강제실시’를 시도하였으나 대부분 미국 정부의 방해에 부딪혀 실패하였다.

한편 WTO 사무총장인 Pascal Lamy는 TNC(Trade Negotiations Committee, 무역협상위원회)의 비공식 모임에서 “2006년 7월 27일에 일반이사회에 현재 진행 중인 DDA 협상(Doha Development Agenda)의 중단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Mr. Lamy는 7월 23일에 열린

호주, 브라질, EU, 인디아, 일본, 미국 간의 각료회의가 의견대립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렬된 후 협상의 중단결정을 내렸다.¹⁾ 또한 Mr. Lamy는 협상의 재개 시점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DDA 협상의 중단 선언이 의약품의 강제실시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 왜냐하면 DDA의 협상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미국 등의 지적재산권 선진국들이 본격적으로 WTO 체제를 우회하여 직접 개발도상국들과의 양자 협상을 통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시도는 이미 세계 각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를 통해서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강제실시를 위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할 때 미국의 반응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우선 TRIPS 협정의 강제실시규정을 검토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태국이 이 규정을 근거로 강제실시를 시도할 때의 미국 제약업계와 미국 정부의 무역압력을 살펴보고, 결국 미국 정부의 강제실시 방해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원인을 분석한다. 그리고 그 결과 탄생한 도하의 공중보건선언의 내용을 살펴본 후 향후 미국 제약업계와 미국 정부의 강제실시 저지를 위한 전략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RIPS 협정의 강제실시규정

* 서강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법학박사. 이 글은 2006년 8월 ‘신임재산권법’에 실린 “TRIPS 협정의 의약품 특허와 공중보건논의에 관한 미국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글의 목적에 맞게 다시 정리한 것임. 더 자세한 시정은 위의 논문을 참조.

1) WTO News, Talks suspended. ‘Today there are only losers.’ (24 July 2006). http://www.wto.org/english/news_e/news06_e/mod06_summary_24july_e.htm 2006년 7월 28일 방문

TRIPS 협정은 제31조에서 강제실시를 “권리자의 허락 없는 특허발명의 이용으로서 정부 또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제3자의 이용을 포함하며, 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특허발명의 창작 뿐만이 아니라 그 이용의 측면도 중요한 것이므로 두 가치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규정이다. 이 규정을 통해서 장래의 의약품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에 역효과를 주지 아니하면서도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어 의약품의 이용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²⁾ 그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강제실시요건

우선 강제실시의 결정은 사안별로 해야 한다(TRIPS 협정 제31조 a호). 그러므로 특정 분야의 발명은 자동적으로 강제실시대상이 된다는 형식의 입법은 TRIPS 협정 위반이 된다.³⁾ 또한 강제실시를 원하는 자는 그 청구 이전에 권리자에게 상당한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상당한 기간 이내에 이용허락을 얻지 못 하였어야 한다(TRIPS 협정 제31조 b호). 다만, 국가비상사태 기타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이용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전합의를 강제실시의 요건으로 입법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러나 국가비상사태 기타 긴급상황의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이하 ‘공중보건선언’이라 한다.)’에 의하면 어떠한 상황이 긴급 상황인지의 여부는 회원국의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⁴⁾ 그리고 일부 견해에 의하면 각 회원국은 긴급상황 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재량권을 남용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염병 또는 조류독감 등의 긴급상황의 선언은 관광이나 투자 등의 다른 영역에서의 대규모의 손실도 의미하기 때문이다.⁵⁾ 공공의 비상업적 이용의 경우 특허가 정부에 의해 또는 정부를 위해 이용되거나 이용될 것을 정부 또는 계약당사자가 알거나 안다고 입증할 근거가 있으면 권리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특허검색 까지 할 필요는 없다.

2) Correa, Public Health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lobal Social Policy Vol.2(3) (2002), p263.

3) Daniel Gervais, The TRIPS Agreement: Drafting History and Analysis (2003), p250.

4) WTO,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14 Nov. 2001 (WT/MIN(01)/DEC/2), Art. 5(a). ‘Each Member has the right to determine what constitutes a national emergency or other circumstances of extreme urgency, it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권한있는 기관이 강제실시권을 부여하는데 그 성격은 통상실시권이어야 하며(TRIPS 협정 제31조 d호), 위와 같이 결정된 강제실시의 법적 유효성은 그 회원국의 사법부의 판단 또는 독립된 상급기관의 심사대상이 되어야 한다(TRIPS 협정 제31조 i호).

2) 국내시장공급

강제실시를 통해서 생산된 특허발명품은 주로 국내시장에 공급되어야 한다(TRIPS 협정 제31조 f호).⁶⁾

3) 권리자에 대한 보상

권리자는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강제실시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서 보상금을 결정한다(TRIPS 협정 제31조 h호). 여기서 경제적 가치란 강제실시가 아닌 경우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한 실시료의 시장가치를 의미한다.⁷⁾

보상금에 관한 결정도 그 회원국의 사법부의 판단 또는 독립된 상급기관의 심사대상이 되어야 한다(TRIPS 협정 제31조 j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강제실시의 시도에 대한 미국의 대응

WTO의 회원국들은 TRIPS 협정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특허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특히 AIDS 등의 치명적인 전염병의 문제가 심각한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에서는 동협정 제31조의 강제실시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된다. 그러나 이들 회원국에서 동협정 제31조의 강제실시의 결정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미국 정부를 이용한 미국의 제약업체의 로비활동에 의해서 정당한 강제실시의 결정을 포기해야만 하였다. 예를 들면 태국정부가 AIDS 치료약에 대한 강제실시 의사를 비추자 미국은 태국을 스페셜 301조의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였고 그 결과 태국정부는 강제실시를 포기해야만 했다. 그 이유는 스페셜 301조의 감시대상국

being understood that public health crises, including those relating to HIV/AIDS, tuberculosis, malaria and other epidemics, can represent a national emergency or other circumstances of extreme urgency.’

5) Gervais, 앞의 각주 3, p251.

6) 그러나 반경쟁적 권력을 시장하기 위해서 결정된 강제실시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7) Gervais, 앞의 각주 3, p252

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단순히 앞으로 무역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만을 의미할 뿐 아니라 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페셜 301조의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면 국내의 산업계로부터 강제실시결정에 대한 강한 반발이 생기게 된다. 실제로 태국의 국립제약회사(State drug factory)의 장(長)인 Krisana Kraisintu가 AIDS의 치료효과가 있는 복제의약품의 생산을 희망하였을 때 태국의 산업계와 상무부 장관의 반대에 부딪혀 이를 포기하였다.⁸⁾

그런데 1997년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특허의약품의 강제실시와 병행수입을 가능케 하는 법안인 Medicines and Related Substances Control Amendment Act를 통과시켰다. 이 법률에 의하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의약품의 가격을 최대한 70~90%까지 낮출 수 있었다.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성인인구의 약16%, 임산부의 약20%, 군인의 약45%정도가 AIDS에 감염되어 있었고, 그 감염률이 가장 빠른 국가로서⁹⁾ AIDS 치료약에 대한 수요가 절실했었다. 처음에 미국의 제약업계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보건부장관인 Nkosana Dlamini-Zuma와 협상해서 문제의 법률을 폐지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¹⁰⁾ 그러자 제약업계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해서 압력을 가할 것을 미국정부에 요청하였고, 미국의 상무부장관, USTR, 부통령은 이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였다. 미국의 부통령인 Al Gore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법률은 특히발명의 보호에 있어서 '기술분야에 따른 차별을 금지' 한 TRIPS 협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의 담당자가 TRIPS 협정 제31조의 강제실시는 실제로 거의 모든 종류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지만, 미국은 공중보건상의 이유로 강제실시를 결정한 것이 TRIPS 협정에 합치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아니

하였다.¹¹⁾ USTR은 1998년에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스페셜 301조의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위에서 언급했던 태국의 경우와 다른 점은 의약품의 강제실시의 문제에 미국의 인권단체가 개입하였다는 것이다. 1999년, 미국의 인권단체와 Ralph Nader와 같은 소비자운동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미국정부의 조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하였다.¹²⁾ 이에 미국의 언론도 가세하기 시작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문제는 2000년 미국 대통령선거운동의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¹³⁾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강제실시법에 대한 개입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에 있어서 주요한 변수가 되자 클링턴 행정부는 더 이상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문제의 입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법률이 TRIPS 협정의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마침내 USTR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하였다.¹⁴⁾

1999년 10월 6일에 Ralph Nader 등은 USTR의 Charlene Barshefsky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동안 개발도상국 등의 강제실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지나치게 경직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후, 우선 태국의 AIDS 치료약에 관련된 강제실시에 대한 정책을 수정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즉시 모든 개발도상국에게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¹⁵⁾ 이어서 1999년 11월 25일부터 26일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Increasing Access to Essential Drugs in a Globalised Economy Working towards Solutions' 회의에서 'Amsterdam Statement to WTO Members States on Access to Medicine'을 채택하였는데(이하 'Amsterdam Statement' 라 한다.),¹⁶⁾ Amsterdam Statement는 WTO에 의약품의 이용에 관한 상설 Working Group을 만들어 다음과 같은 TRIPS 협정 이행상의 중요 쟁점에 관한 검토를 할 것을 WTO 회원국들에게 촉구하였다.¹⁷⁾

8) Tina Rosenberg, Look at Brazil, New York Times Magazine, 28 January, 2001.
9) Kurt Shilling, Firms Fight South Africa to Keep Patients on AIDS Drugs, The New York Times, 4 March, 2001

10) Simon Barber, Detractors Hound Gore over AIDS Drugs, Johannesburg Business Day, 30 June, 2003; Patrick Bond, Globalization, Pharmaceutical Pricing and South African Health Policy: Managing Confrontation with U.S. Firms and Politicians,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29:4 (1999), p.3.

11) Bond, 앞의 각주 10, p.8.

12) Ralph Nader, Medicine Held Hostage by Profits, San Francisco Bay Guardian, 28 April, 1999.

13) Barber, 앞의 각주 10.

14) Barton Gellman, Gore in Conflict of Health and Profit, The Washington Post, 20 May, 2000.

15) Ralph Nader 외, October 6, 1999 Letter to Charlene Barshefsky regarding Review of US Trade Policy as it Relates to Access to Essential Drugs.
<http://www.cptech.org/ip/health/cb-odc6-99.htm> (2006년 7월 27일 방문).

16) 이 회의는 Health Action International, Médecins Sans Frontières, Consumer Project on Technology가 개최하였다. Amsterdam Statement to WTO Members States on a Access to Medicine.

17)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id. 참조.

- 특허발명의 강제실시를 규정한 TRIPS 협정 제31조를 가장 잘 운용할 수 있는 방안.
- 국내 의약품 시장의 규모가 작은 국가들도 강제실시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강제실시를 통해서 제조한 의약품의 수출을 허용함에 있어서 TRIPS 협정 제30조를 이용하는 방안.
- 특허권이 복제의약품의 연구와 개발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TRIPS 협정 제30조를 이용해서 의약품 연구를 위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
- 필수의약품에 관해서는 보다 단순하고 신속한 강제 실시절차를 개발하여 권고하는 방안.

다음날부터 Seattle에서 열린 WTO 각료회담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이제부터 미국정부는 가난한 나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이용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수립을 할 것”을 선언하였고,¹⁸⁾ 2000년 5월 10일에는 “사하라 사막 남쪽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AIDS 치료약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실시결정에 대해서 USTR이 무역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할 것과 위의 국가들이 AIDS 치료약을 개발하고 보건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을 돋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¹⁹⁾

위와 같이 비록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 대해서지만 미국이 TRIPS 협정 제31조에 의한 특허의약품의 강제실시를 인정하고 USTR의 개입을 공식적으로 금지한 결과 아프리카와 개발도상국들은 예전과 같은 무역보복의 위협을 현저히 적게 느끼고 보다 활발하게 의약품의 이용을 위한 공중보건논의를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아프리카 국가, 인디아, 브라질이 주도하는 80개 국가그룹(Group of 80 Countries)은 공중보건선언을 제안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2001년 11월 14일에 채택되었다.

공중보건선언의 내용

정보에 대한 창작의욕의 보호와 이용의 균형과 조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공중보건선언은 TRIPS 협정의 내용 중 특허권에 의해서 보호받는 의약품발명에 대한 이용의 측면을 규정한 동협정 제31조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그 내용은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TRIPS 협정도 공중보건문제의 해결수단 중 하 나이므로(동선언 제2조),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회원국의 권리, 특히 모든 사람의 의약품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회원국의 권리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TRIPS 협정을 해석하고 이행하여야 한다(동선언 제4조). 이와 관련하여 WTO의 전 회원국은 공중보건을 위해 지적재산의 이용에 관한 TRIPS 협정의 규정들을 최대한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둘째, 각 회원국은 강제실시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강제실시사유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동협정 제5조 a호). 또한 각 회원국은 국가비상사태 또는 긴급상황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공중보건상의 위기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긴급상황에 포함된다(동협정 제5조 b호). 그리고 강제실시사유인 공중보건문제로서 HIV/AIDS, 결핵, 말라리아 기타 전염병을 예시적으로 열거하였다(동협정 제1조 및 제5조 c호). 또한 병행수입의 문제도 각 회원국의 결정에 맡겨졌다(동협정 제5조 d호).

셋째, 그런데 자체적으로 의약품을 생산할 능력이 없는 회원국은 의약품 생산능력이 충분한 다른 회원국에서 강제실시결정을 내린 후 이를 수입해야 한다. 그러나 TRIPS 협정 제31조 f호는 “강제실시를 통해서 생산된 특허발명품은 주로 국내시장에 공급되어야 한다”고 규정 하였으므로, 의약품 생산능력이 있는 회원국이 의약품을 생산하여 긴급상황에 처해 있는 국가에 수출한다면 이는 TRIPS 협정의 위반이 된다. 공중보건선언 제6조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TRIPS 이사회에게 2002년 말까지 이 문제의 해결책을 일반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공중보건선언 제6조).

공중보건선언의 의미 : 미국의 전략변화

TRIPS 협정의 협상과정을 살펴보면 강제실시와 관련된 미국의 입장변화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의 제약업계와 이의 로비를 받는 미국 정부는 WTO 체제를 포기하고 새로운 체제를 선택할 것이며, 이미 선택하였다. 즉, 미국은 WTO 체제의 영향을 받지

¹⁸⁾ Medecins Sans Frontieres, MSF Reaction to UNAIDS Proposal, May 11, 2000.
¹⁹⁾ Executive Order 13155 of May 10, 2000, Access to HIV/AIDS Pharmaceuticals and

Medical Technologies, 65 Federal Register, v.65 no.93 (Friday, May 12, 2000), 30521-30523.

아니하는 지역협정 및 양자협정에 집중할 것이다. 양자 협상을 함에 있어서 강제실시와 관련된 미국 제약업계의 반응은 두 가지를 예상할 수 있다. 첫째는 강제실시의 제한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미국 내외의 인권단체들이 전 세계의 특허의약품의 강제실시와 관련된 미국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으며 국내의 인권단체들도 TRIPS 협정의 협상 당시에는 달리 미국 정부의 압력에 적극 대처하고 있고, 미국의 제약업계도 강제실시를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것의 정치적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므로 강제실시의 제한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는 힘들 듯 하다. 그 대신 특허권 보호대상의 확대, 보호기간의 연장, 의약품 테스트데이터 보호의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미국은 10여개 국가와 FTA(Free Trade Agreement)를 체결하였으며 우리나라와도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데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현재 TRIPS 협정의 내용보다 더 강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²⁰⁾

결론 : 대응방안

우리나라는 2005년 5월 3일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월 31일에 공포되었다. 이는 WTO의 공중보건선언과 2003년 8월의 WTO의 일반이사회 결정문의 내용을 우리 특허법의 강제실시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²¹⁾ 이러한 입법에 관해서는 미국의 반대가 있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개정된 특허법의 규정은 대부분 TRIPS 협정의 개정안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AIDS 또는 조류독감의 치료를 위해서 강제실시를 위한 통상실시권의 재정을 시도할 때 미국 정부는 한국을 스페셜 301조의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한다든지 하는 형식의 무역압력을 통해서 강제실시를 좌절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다음과 같은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첫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미국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조직으로서 인권단체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인권단체들이 미국 및 유럽의 인권단체와 연계해서 공동으로 논리를 개발하고 실제로 무역압력이 가해질 때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인권단체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 정부 간의 협상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국가 간의 협상의 내용을 모두 공개할 경우의 단점도 있다. 그러나 공중보건 등 인권과 직결되는 내용은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공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²²⁾

둘째, 강제실시의 결정까지 가지는 아니하더라도 강제실시의 위협만으로도 의약품의 가격인하효과를 볼 수 있다.²³⁾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는 탄저병의 치료제인 Cipro에 대한 강제실시를 고려하였는데, 결국 강제실시 없이 생산업체인 Bayer로부터 대규모의 가격인하를 얻어낼 수 있었다.²⁴⁾ 또한 브라질도 강제실시의 가능성으로 위협하여 AIDS 치료약의 가격인하를 얻을 수 있었다.²⁵⁾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강제실시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²⁶⁾

20) David Vivas-Eugui, *Regional and Bi-lateral Agreements and a TRIPS-Plus World The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Quaker United Nations Office, New York (2003), p.9.

21) 개정 특허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익희, 특허법명의 권리회복제도와 강제실시제도: 특허법 개정내용 해설, *지식재산21* 제99호 (2005년 7월), 25쪽 참조.

22) 실제로 미국은 칠레와의 FTA 협상 중에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 비판을 당한 적이 있다.

23) 유소영 외 2인, 강제실시권 제도 변화에 따른 정부의 실질적 대응방안, *별간예정 : 이안희, 특허법명의 강제실시제도: 공중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지식재산21* 제88호 (2005년 1월), 199쪽.

24) Sell, 앞의 각주 53, p.160.
25) Id.

■ 참고문헌

- 육소영 외 2인, 강제실시권 제도 변화에 따른 정부의 실질적 대응방안, 발간예정 : 이익희, 특허법명의 강제실시제도 : 공중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지식재산21 제88호 (2005년 1월).
- 이익희, 특허발명의 권리회복제도와 강제실시제도 : 특허법 개정내용 해설, 지식재산21 제91호 (2005년 7월).
- Abbott, Kenneth W., Economic Issue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 The Evolving Boundaries of International Federalism, 18 Cardozo L. Rev. 971 (1996).
- Amsterdam Statement to WTO Members States on a Access to Medicine (1999).
- Barber, Simon, Detractors Hound Gore over AIDS Drugs, Johannesburg Business Day, 30 June, 2003.
- Bond, Patrick, Globalization, Pharmaceutical Pricing and South African Health Policy: Managing Confrontation with U.S. Firms and Politicians,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294 (1999).
- Correa, Carlos M., Public Health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lobal Social Policy Vol.2(3) (2002).
- Evans, Gail, Intellectual Property as a Trade Issue: the Making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8 World Competition 137 (1994).
- Executive Order 13155 of May 10, 2000, Access to HIV/AIDS Pharmaceuticals and Medical Technologies, 65 Federal Register, v.65 no.93 (Friday, May 12, 2000), 30521–30523.
- Gellman, Barton, Gore in Conflict of Health and Profit, The Washington Post, 20 May, 2000.
- Gervais, Daniel, The TRIPS Agreement: Drafting History and Analysis (2003).
- McManis, Charles R., Taking TRIPS on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Emerging Computer Technology, 41 Vill. L. Rev. 207 (1996).
- 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 Reaction to UNAIDS Proposal, May 11, 2000.
- Nader, Ralph, Medicine Held Hostage by Profits, San Francisco Bay Guardian, 28 April, 1999.
- Nader, Ralph 외, October 6, 1999 Letter to Charlene Barshefsky regarding Review of US Trade Policy as it Relates to Access to Essential Drugs.
- North, Douglass C.,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1990).
- Sanbro, Michael A. & Paine, Lynn Sharp, Pfizer: Global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Harvard Business School Cases 1995).
- Sell, Susan K., Private Power, Public Law: The Globa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003).
- Preeg, Ernest H., Traders in a Brave New World: the Uruguay Round and the Future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1995).
- Rosenberg, Tina, Look at Brazil, New York Times Magazine, 28 January, 2001.
- Ross, Julie Chasa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GATT Uruguay Round: A Negotiating History (1986–1992) (Terence P. Stewart ed., 1993).
- Ryan, Michael P., Knowledge Diplomacy (1988).
- Schoenborn, Brian J., Note, Public Participation in Trade Negotiations: Open Agreements, Openly Arrived at?, 4 Minn. J. Global Trade 103 (1995).
- Shilinger, Kurt, Firms Fight South Africa to Keep Patents on AIDS Drugs, The New York Times, 4 March, 2001.
- Transitional Patent Protec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52 Fed. Reg. 3369 (1987).
- U.S. General Accounting Office, Strengthening Worldwid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AO Doc. No. GAO/NSIAD-87-65 (1987).
-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Foreign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Effect on U.S. Industry and Trade, publication 2065, Washington, D.C., February 1988.
- Vivas-Eugui, David, Regional and Bi-lateral Agreements and a TRIPS-Plus World: The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Quaker United Nations Office, New York (2003).
- Young, Michael K., (원성한 역), 미국통상법과 대외정책분석, 법문사 (1997).
- WTO, Amendment of the TRIPS Agreement : Decision of 6 December 2005, (WT/L/641, 8 December, 2005),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14 Nov., 2001 (WT/MIN(01)/DEC/2), TRIPS and Pharmaceutical Patents, Fact Sheet, September 2003.
- WTO News, Talks suspended, 'Today there are only losers.' (24 July, 2006).